

# EU Brief

| EU 동향 |

- 유럽 재정위기와 한-EU FTA 그리고 한국의 선택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and Korea-EU FTA
- 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과 향후 전망  
ECB's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s and eurozone outlook
- 스페인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과 정치 리더십  
Political leadership and possibility of Spanish sovereign debt crisis
- 유럽 M&A 사업기회와 추진방안  
Opportunities in Europe's M&A market and entry strategy
- 스웨덴과 핀란드의 新혁신 전략  
Strengthening R&D mechanisms in Sweden and Finland



**SAMSUNG**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의 기업결합 규제

## EU's merger regulation

Mergers are examined at the European level in order to prevent some mergers which may reduce competition in a market and harm consumers through higher prices and reduced choice. The 1989 Merger Regulation gave the commission sole control over all major cross-border mergers. It has been amended in 1997 and 2004 and it is applicable to all concentrations with an EU dimension. A concentration acquires an “EU dimension” where the combined aggregate worldwide turnover of all the undertakings concerned is more than 5 billion euros and the aggregate turnover in the EU of each of at least two of the undertakings concerned is more than 250 million euros, unless each of the undertakings concerned generates more than two thirds of its aggregate EU-wide turnover within a single EU country. The Commission has powers to initiate proceedings, to carry out investigations and to impose fines.

### EU의 기업결합 규제와 합병통제규칙

유럽 국가들은 유럽 공동체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합병통제 규칙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다. 합병통제규칙은 1989년 제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장집중(Concentration)을 EU가 규제하는 것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합병통제규칙은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일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럽 공동체 시장에서 시장집중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에 적용되고 있다.<sup>1</sup> 합병통제규칙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3개 회원국과 EU 27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유럽경제지역(EEA) 30개 회원국에 적용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정확히는 공정경쟁총국(DG Comp: 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이 합병통제규칙을 집행하고 있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 합병통제규칙의 적용대상

합병통제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기업결

<sup>1</sup>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OJ L 395/1 (1989, 12. 30.) amended by Council Regulation (EC) No. 1310/97 of June 30, 1997 and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January 20, 2004

합이 “시장집중 요건”과 “일정한 매출액 요건(이하 “EU 차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업결합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EC가 기업결합 심사권한을 가지며, 개별 EU 회원국은 독자적인 심사 권한이 없다. 즉,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회원국별로 기업결합 심사를 하게 된다.

### 시장집중 요건(Article 3)

먼저 시장집중 요건은 합병, 주식 또는 자산 취득, 계약이나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a change of control on a lasting basis)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control)란 당사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decisive influence on an undertaking)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분을 취득해야 “지배력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력 취득이 인정된다.

그 외에 주식보유의 분산 정도, 기관 구성에 대한 영향력 정도 또는 실질적인 주주총회의 지배가능성의 정도 등에 따라 과반수 이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배력 취득”이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둘 이상의 독립적인 회사들이 상대 회사에 대해 경영 관여를 하거나, 비토권(Veto Right) 등이

업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sup>12</sup>

비록 노키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핀란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창업활성화 노력이 강화되면서 핀란드에서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벤처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sup>10</sup>

노키아의 추락이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핀란드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노키아를 떠난 우수 인력들이 창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sup>11</sup> 그리고 핀란드의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로비오가 새로운 벤처 신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핀란드에서는 창

<sup>12</sup> 앵그리버드는 다운로드 수가 2009년 말부터 2011년 말 사이에 5억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로비오는 2011년 3월 4,200만 달러의 자금을 헤지펀드와 엔젤펀드를 통해 확보

<sup>10</sup> Finnish startups head to Silicon Valley. (2012. 3. 15.). Uutiset.

<sup>11</sup> Nokia's losses become Finland's gains. (2011. 8. 4.). Wall Street Journal.

**B. Phase I(예비심사)**

1단계의 심의 결과는 당사자가 EU집행위에 신고하는 날로부터 25 영업일 내에 발표되어야 하며, 만약 회원국이 요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당해 기업결합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약속(commitments)을 제공하면 35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다.

**다. Phase II(정밀심사)**

만약 EU집행위가 1단계 심사 시 시장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the concentration raises serious doubts) 그 결과를 발표하면 2단계 심사가 시작되며, 최종 결론은 2단계 절차 시작으로부터 90 영업일 안에 발표된다. 하지만 만약 신고 당사자가 2단계 절차 시작으로부터 55 영업일 안에 당해 기업결합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약속(commitments)을 하면 105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다. 신고 당사자가 EU집행위와 합의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0 영업일을 추가 연장해주는데, 2단계의 최장 기간은 125 영업일이다.

**금전적 제재**

기업결합 당사자가 합병통제규칙의 절차(가령, 자료 제출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를 위반했을 때 당사자 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합병통제규칙의 실제법적인 내용(가령, 공동체 시장과 양립되지 않은 기업결합을 한 경우)을 위반 했을 때 당사자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회가 수집한 정보 파일을 열람할 권리와 공식적 구두 변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is preceded by the issuing of a statement of objections, with a right for the parties to access the file and to request a formal oral hearing) 각국 정부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 결함에 관한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f Member States)'는 심의를 거쳐 정밀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Article 8)**

- 8(1): 시장집중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한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허가
- 8(2): 시장집중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될 수 있도록 조건과 의무를 부가한 후 기업결합 허가
- 8(3): 공동체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불가
- 8(4): 심사가 끝나기 전에 기업결합이 진행되었거나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a condition for clearance) 위반하여 진행되었다면 기업결합 해체
- 8(5): 임시 조치 (Interim measure)
- 8(6):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심사 허가 철회

**기업결합 신고 시기 및 처리기한****A. 신고 시기**

기업결합 당사자는 계약 완료 후, 공개 입찰 발표 시, 지배력 획득(acquisition of control) 시, 혹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의와 성실의 의지를 표현(manifestation of good faith intent to do so) 하였을 때 EU집행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위 다섯 가지 요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기업결합 심사 기준**

EU 이사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당해 기업결합이 공동체 시장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강화되는가 (즉,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지 않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행해진다.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시장 구조, 공동체 안팎의 현실 또는 잠재적인 경쟁, 당사자의 시장 내 지위, 경제력, 관련 상품의 수급동향, 진입 장벽, 소비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요인 등을 고려한다.

**A. Phase I (예비 심사)**

회원국 중 결정 권한이 있는 경쟁당국과 위원회는 관련 정보, 인터뷰, 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를 통해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결과 (Article 6)**

- 6(1)(a): 시장집중이 합병통제규칙의 적용범위와 무관하면 기업결합 허가
- 6(1)(b): 시장집중이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는 데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허가 (the concentration does not raise serious doubt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common market)
- 6(1)(c): 시장집중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면 Phase II 정밀 심사 실시

**B. Phase II (정밀 심사)**

회원국 중 결정 권한이 있는 경쟁당국과 위원회는 관련 정보, 인터뷰, 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를 통해 정밀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양립 불가'라는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신청 당사자들은 위원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News Corp/Premiere(2008년) 사건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과거 참석률 현황을 기초로 단지 24.2%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 반면, Ryanair/Aer Lingus(2007년) 사건에서는 25%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EU 차원 요건(Article 1)**

다음으로 위에서 말하는 시장집중은 "EU 차원"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EU 차원"이라 함은 아래 제1요건 또는 제2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요건]**

당사자 전부의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50억 유로를 초과할 것.

당사자 중 적어도 2개 회사의 유럽 공동체 내 매출액이 각각 2.5억 유로를 초과할 것.

특정 회원국의 매출액이 EU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위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제2요건]**

당사자 전부의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25억 유로를 초과할 것.

당사자 중 적어도 2개 회사의 EU 공동체 내 매출액이 각각 1억 유로를 초과할 것.

당사자 전부의 매출액 합계가 적어도 3개의 EU 회원국에서 각 회원국 별로 1억 EUR를 초과할 것.

앞의 요건에 해당하는 3개 이상의 EU 회원국 중 적어도 2개 회사의 매출액이 각각 2,500만 유로를 초과할 것

특정 회원국 매출액이 EU 공동체 전체 매출액의 3분